

주제: 매장음악 저작권

2018년 8월 시행된 개정안으로 매장에서 음원을 트는 경우의 음원 저작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규과정] 음악저작권 바로알기 : 매장음악 저작권

### 매장 음악 저작권

커피숍. 음식점. 서점. 헬스클럽. 호프집 등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장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항상 매장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 흘러 나오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점주들은 인터넷 음원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음원을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결제는 개인으로 하고, 음원은 매장에서 상업용으로 재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업용 재생의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점주들은 따로 <mark>음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mark>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mark>공연권료를 지불해</mark>야 합니다.



#### 매장 음악 저작공연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 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즉, <u>매장에서 음원을 사용하는 것도</u> 일종의 공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그 자체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다만, 이러한 공연권의 제한은 저작권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상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내 학계와 권리자 단체 등에서 현행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공연권 행사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더구나 유럽연합(EU) 측에서도 우리 공연권 제한 규정이한-EU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쟁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이에, 창작자의 권익 보장, 국제 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의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 를 개정하게 되었고, 2018년 8월 23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u>공연권 확대 업종</u>

분류 (시행령 제 11조)	기존 공연 저작권료 징수대상	공연권 확대 신규 업종
식품위생법	단란주점, 유흥주점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 <del>올음</del> 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한국마사회법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체력단련장
항공법, 해운법, 철도 사업법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 사업용 선박, 여객용 열차	
관광진흥법	호텔, 휴양콘도, 카지노, 유원시설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제외)

[정규과정] 음악저작권 바로알기 : 매장음악 저작권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영업허가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저작권료 징수가 면제되고, 그 외에는 영업허가 면적에 따라 월 4,000원에서 최고 20,000원까지 징수합니다.

<u>체력단련장</u> 또한 영업허가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대상에서 면제되고, 그 외에는 영업허가 면적에 따라 월 11,400원에서 59,600원까지 징수합니다.

### <u>복합쇼핑물, 기타 대규모 점포</u>에서는

기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적용하던 징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최저 월정액 8,000원을 징수하고, 전통시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